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에 “기타 수입금(지원금)”을 신설 (안 제2조제3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4조의2)
 - 위원회의 심의사항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회계공무원의 명칭 및 관직 변경 (안 제5조)
 - 기금출납명령관(주민생활지원국장) → 기금운용관(청소행정과장)
 - 기금출납공무원(청소행정과장) → 기금출납원(재활용담당주사)
- 결산보고 :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 80일 이내 (안 제8조)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종로구 관할 구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기타 재활용 관련 소요비용에 충당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1995년 기금설치 이후 현재까지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 총 수입금 1,129,882천원 중 재활용 물품구매, 시설 유지·보수 등에 739,112천원을 집행하고 2007. 4월말 잔액이 390,770천원으로써, 상시 3억원 내외의 기금잔고를 유지하는 등 외견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말현재	2005년말현재	2006년말현재	2007.4.말현재
기금잔고	282,332	319,968	376,769	390,770

- 그러나 재활용관련 사업의 전체 집행내용을 보면, 소모품 구입이나 일부 시설 유지·보수 등에 한해 기금으로 집행하고 재활용수거·운반 위탁비 및 공공요금 등 소요재원의 60~70%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성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기금의 수입구조 개선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재활용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4 집행	‘2005 집행	‘2006 집행	‘2007(예산)
합 계		145,262	117,990	258,005	272,030
기 금	재활용 물품 구매	3,850	21,430	17,549	20,000
	시설 및 유지보수	27,594	16,641	58,494	30,000
	잔재쓰레기,상차비용등	13,063	10,413	1,089	2,000
일 반 회 계	재활용수거운반위탁비	-	55,415	164,564	195,000
	재활용수거그물망구매	36,501	3,750	3,300	13,000
	공공요금, 기타	64,254	10,341	13,009	12,030

○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

- 기금수입 항목 신설 : 안 제2조 제3호

기금 재원에 “기타수입금(지원금)”을 추가하였는데, 스티로폼 재활용처리에 따라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및 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로부터 우리 구에 배분된 생산자분담금 수입에 대해, 종전 잡수입 처리해 오던 것을 기금수입 항목으로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 안 제4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의 들러리가 되거나 행정업무의 면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은 가급적 관계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기타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 회계관직 명칭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도 종전 국장 및 과장에서 “청소행정과장 및 재활용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한 것과, 안 제8조에서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조문 정비한 내용이므로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①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단, 해당기금에 있어서는 설치조례에 관직지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본 청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담당과장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관(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별 담당관(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2. 구금고 - 구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구금고수납대행점과 구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삭제 2001.02.28>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